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1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1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지원대상(안 제2조 및 제6조)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육성사업의 추진(안 제5조)
- 시설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명순)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1. 09.
- 회부일자 : 2026. 01. 12.
- 상정일자 : 2026. 01. 19.

2. 제안이유

- 평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의 및 지원대상(안 제2조 및 제6조)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육성사업의 추진(안 제5조)

- 시설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및 제10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농업의 신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하되, 그린바이오기업 전환 가능성이 있는 예비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성장산업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벤처·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3. 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27
----------	-----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및 제6조)
- 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다. 육성사업 추진 (안 제5조)
- 라. 시설운영 및 협력체계 (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0. 22. ~ 2025.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입법예고 제2025-1533호, 경제과-54627(2025. 10. 21.)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6354(2025. 10. 21.)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6354(2025. 10. 21.)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8215(2025. 10. 20.)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8278(2025. 11. 19.)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29(2026. 1. 5.)호]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기업”이란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해당하나 아직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전략
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설·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기업 정착 지원 및 우대지원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4. 판로 확대 및 인증·실증 인프라 지원
5. 벤처캠퍼스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6. 평창군 특용작물 및 임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비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류한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다.

제7조(시설운영 지원)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공동 기술개발, 펀드조성,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의안은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포괄적 성격의 조례로서,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나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군수는 ~ 지원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해순
연락처	(033) 330 - 2540